KAIST 학부 총학생회

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

재정운용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준용한다"를 "적용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매 반기 초 집행조정위원회"를 "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집행조정위원회"로 하고, "매 반기 초 기층예산심의회의"를 "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.